

문서번호	의회13130-162
보존기간	영구
보고일자	'99. 7. 8

계	전문위원	간사	위원장
의회13130-162	제166주		장
협조			

1999. 7. 14

제4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산업도시위원회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7. 1 제천시장
- 나. 회부일자 : 1999. 7. 3
- 다. 상정일자 : 1999. 7. 8 (제49회 임시회제1차산업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가. 제안이유

'97. 1. 17 제천시 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 수질검사 시험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인근 시, 군 및 충북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균형이 맞지 않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시험수수료 금액으로 조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수질검사·시험수수료를 중액조정
(제4조1항 : 현행 145,050원을 개정 177,400원으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6. 12. 26 제천시 상수도사업소가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97. 1. 17 제천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시험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며, 금번 개정하는 것으로 '99. 4. 30 입법예고, '99. 6. 9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법규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장비 및 운영 인력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시민의 건강생활 유지와 불편 해소를 우선해야 하지만 수익적 측면도 고려한다면 보다 빨리 조례를 정했어야 했다고 사료됨.
따라서 수질검사 기관이 인근 충주시, 또는 원주시에도 있는 바, 앞으로 경영 효율화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증수액은 어느정도라고 판단 하며, 인근 도시인 충주와 원주시에도 금년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오히려 제천시 수질검사 수수료를 개정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타 기관보다 적게 받았을 때 오히려 타지역에서 우리시도 검사를 받으려 오는 예가 있어 세수는 더 증대되지 않겠는가? (김병창, 최상귀 위원)

나. 답변요지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 조례개정으로 인한 세수증가액은 년 2천만원 정도로 예상하며 년간

검사건수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제천이 40%, 단양이 30%, 충주 등 기타 지역이 30%정도이나 인근 충주, 원주가 검사기관으로 금년 봄 지정되었다 하더라고 제천시가 타지역 검사기관 보다 신뢰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자리적으로 제천과 가까운 지역은 제천으로 오기 때문에 요금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함.

5. 소수의견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심사보고 붙임서류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 · 시험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끝.